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08일

진교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**	한** 1969-09-15	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10-31